

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0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여성능력개발원 및 여성발전센터의 명칭을 여성일자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비전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통합명칭 “여성일누리”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“여성능력개발원”을 “여성일누리본부”로, “여성발전센터”를 “여성일누리캠퍼스”로 변경함(안 제4조 제3항, 제7조의 제목, 제8조의 제목, 제17조제1항, 제18조제1항제3호, 제19조제2항, 별표 3의 표, 별표4의 제목 및 표, 별표8의 제목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양성평등기본법」 등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(2) 입법예고(2019. 5. 9. ~ 5. 29.) 결과: 의견없음
- (3)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

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호 중 “여성능력개발원”을 “여성일누리본부”로, 같은 호 및 제4호 중 “여성발전센터”를 각각 “여성일누리캠퍼스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“(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)”을“(여성일누리 본부의 명칭 및 기능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여성능력개발원”을 “여성일누리본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여성능력개발원이”를 “여성일누리본부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”를 “여성일누리캠퍼스와 여성인력개발센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여성발전센터”를 “여성일누리캠퍼스”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“(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)”을“(여성일누리캠퍼스의 명칭 및 기능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여성발전센터”를 각각 “여성일누리캠퍼스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여성발전센터”를 “여성일누리캠퍼스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제3호 중 “여성발전센터”를 “여성일누리캠퍼스”로 한다.

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여성발전센터”를 “여성일누리캠퍼스”로 한다.

별표 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명 칭	위 치
서울특별시여성일누리본부	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9

별표 4의 제목 “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위치”를 “여성일누리캠퍼스의 명칭 및 위치”로 하고, 표의 명칭란 중 “남부여성발전센터”, “동부여성발전센터”, “북부여성발전센터”, “서부여성발전센터”, “중부여성발전센터”를 각각 “여성일누리남부캠퍼스”, “여성일누리동부캠퍼스”, “여성일누리북부캠퍼스”, “여성일누리서부캠퍼스”, “여성일누리중부캠퍼스”로 한다.

별표 8의 제목 “여성발전센터 이용료 부과기준”을 “여성일누리캠퍼스 이용료 부과기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여성관련시설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여성능력개발원</u> :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, <u>여성발전센터</u>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평가·조정·지원 등의 총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</p> <p>4. <u>여성발전센터</u> :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, 취업·창업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</p> <p>5.·6. (생략)</p> <p>제7조(<u>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</u>)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<u>여성능력개발원</u>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와 같다.</p> <p>② <u>여성능력개발원</u>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여성발전센터</u>와 <u>여성인력개발</u></p>	<p>제4조(여성관련시설의 종류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여성일누리본부</u> ----- ----- ----- <u>여성일누리캠퍼스</u>----- ----- -----</p> <p>4. <u>여성일누리캠퍼스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5.·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<u>여성일누리본부의 명칭 및 기능 등</u>) ① ----- <u>여성일누리본부</u>----- -----.</p> <p>② <u>여성일누리본부가</u>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여성일누리캠퍼스</u>와 <u>여성인력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센터</u>의 총괄·조정·평가 및 지원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<u>여성발전센터</u>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</p> <p>5. (생략)</p> <p>제8조(<u>여성발전센터</u>의 명칭 및 기능 등) ① 제4조제4호에 따른 <u>여성발전센터</u>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과 같다.</p> <p>② <u>여성발전센터</u>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제17조(교육이용) ① <u>여성발전센터</u>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직업교육·생활문화교육·특별교육·창업보육 및 아동교실교육 과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하되, 시장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이용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.</p> <p>②·③(생략)</p> <p>제18조(이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</p>	<p><u>개발센터</u>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여성일누리캠퍼스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<u>여성일누리캠퍼스</u>의 명칭 및 기능 등) ① ----- <u>여성일누리캠퍼스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<u>여성일누리캠퍼스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교육이용) ① <u>여성일누리캠퍼스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이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· 징수하여야 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여성발전센터</u> :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</p> <p>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9조(이용료의 감면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<u>여성발전센터</u>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	<p>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여성일누리캠퍼스</u> : 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9조(이용료의 감면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여성일누리캠퍼스</u>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여성인력개발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간판 등 교체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간판 등 사인물 교체비용이 약 280백만원으로 예상되어, “한시적인 경비로서 10억원 미만인 경우”에 해당됨

- 산출내역 : 간판교체(10백만원×24개 기관 = 250백만원), 간판 등 디자인비용 30백만원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김 석 천 (02-2133-5028)